



구분	채용분야 근					근무조건	채용
十世	직급	직	무분야	채용권역	근무형태	근무지	인원
경력직	2급	신업보건 의학 (직업환경의학)		부산	전일제 (주 40시간)	연구원(울산)	1명

공단사업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시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시업 수행 등					
핵심직무	▶ 직업건강연구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수행					
수행업무	 ▶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해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의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적 조사 및 업무관련성평가 수행 ▶ 기존 직업성질환과 새로운 원인에 의한 신종 직업성질환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직업건강연구 계획 수립 및 수행 ▶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 지도 ▶ 신규 및 기존 유해인자에 대한 검사방법, 건강진단 실시방법 개정 등 					
필요지식 및 기술	 ▶ 직업환경의학 및 직업역학 전문지식 및 활용능력 ▶ 직업환경 및 직업의학 분야 문헌 조사 및 활용능력 ▶ 직업환경 및 직업의학 분야 통계 자료 분석능력 ▶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필요역량 및 태도	 ▶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객관적 · 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 조직 내 ·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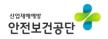


(지원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

	학위		l공* 학사 학위 이상 면전공 : 의학		
지	자격	▶ 의사 [▶ 직업횐	면허증 남경의학 전문의 자격증		
원 자	경력	▶ 경력 [!]	▶ 경력 무관		
격		학위	_		
	증빙 서류	자격	의사 면허증 사본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에 따른 의사 면허증명서 및 전문의 자격증명서		
		경력	_		

(우대사항) 우대자격증 보유자는 아래 자격증 종류에 따라 [서류] 전형 만점의 가점 부여

		구분	가산점 비율	자격증 종류									
		기술사	5%	해당없음									
우 대	717	기능장	3%	해당없음									
사		기사		해당없음									
항		산업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1%	해당없음
	증빙 서류	_											





채용분야 구분						근무조건	채용
TE	직급	직	무분야	채용권역	근무형태	근무지	인원
경력직	2급	신업보건	의학 (예방의학)	부산	전일제 (주 40시간)	연구원(울산)	1명

공단사업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사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핵심직무	▶ 직업건강연구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수행
수행업무	 ▶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해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의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적 조사 및 업무관련성평가 수행 ▶ 기존 직업성질환과 새로운 원인에 의한 신종 직업성질환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직업건강연구 계획 수립 및 수행 ▶ 신규 및 기존 유해인자의 검사방법, 건강진단 실시방법 개정 등
필요지식 및 기술	 ▶ 직업역학 전문지식 및 활용능력 ▶ 직업환경 및 직업의학 분야 문헌 조사 및 활용능력 ▶ 직업환경 및 직업의학 분야 통계 자료 분석능력 ▶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필요역량 및 태도	 ▶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객관적 · 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 조직 내 ·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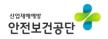


(지원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

	학위		l공* 학사 학위 이상 면전공 : 의학				
지	자격	▶ 의사 면허증 ▶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증					
원 자	경력	▶ 경력 [!]	무관				
격		학위	_				
	증빙 서류	자격	의사 면허증 사본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에 따른 의사 면허증명서 및 전문의 자격증명서				
		경력					

(우대사항) 우대자격증 보유자는 아래 자격증 종류에 따라 [서류] 전형 만점의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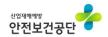
		구분	가산점 비율	자격증 종류
		기술사	5%	해당없음
우 대	117	기능장	3%	해당없음
사		기사		해당없음
앙	항	산업기사	1%	해당없음
	증빙 서류	_		





구분		채 용분 야			근무조건	채용
TE	직급	직무분야	채용권역	근무형태	근무지	인원
신입직	5급	신업인전	공고 참조	전일제 (주 40시간)	(최초 5년) 채용권역 내 (5년 경괴) 전국 순환	공고 참조

공단시업	신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시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시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시업 수행 등
핵심직무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 분야 기술지원, 심사, 교육 등 사고·사망재해 예방사업
수행업무	 ▶ 전국 중상해, 사고사망 등 재해분석을 통한 고위험 시업장 선정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 ▶ 유해 · 위험기계에 대하여 설계 · 제조 · 설치 시 사전안전성 심사 및 현장확인 지원 ▶ 기술 ·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 ·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 위험성평가, KOSHA-MS, 민간 · 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등 안전경영환경 정착 지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확인, 중대재해조사, 진단 등 재해예방 활동 수행 ▶ 사고조사,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산업안전통계 등 연구업무 수행 ▶ 산업안전 분야 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개발, 미디어 개발 · 보급, 교육과정 운영 제반 관리 등
필요지식 및 기술	 ▶ (주요) 고체·유체·열역학, 기계재료, 기계설계, 유공압, 비파괴 등 기계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 (주요)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제어계측 등 전기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 (주요) 유체·열역학, 회학공학, 석유회학, 고분자, 반응공학 등 회공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 (주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 (주요) 기계설비, 화학플랜트, 전기·전자기기 등의 특성, 설계·운용 및 유해·위험성 관련 지식 ▶ (일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법령의 해석 및 적용능력 ▶ (일반)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 ▶ (일반) 제조 현장에 대한 점검 시 잠재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확인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력 ▶ (일반) 사업장의 공정 및 안전보건정보를 이해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 ▶ (일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 (일반) 국제협력 교류, 국제안전보건동향파악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 ▶ (일반)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필요역량 및 태도	 ▶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지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객관적 · 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 조직 내 ·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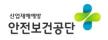


(지원자격) 이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기능 (단, 기타분야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

	학위	▶ 학위 무	관	
	자격	▶ 자격 무	관	
	경력	▶ 경력 무	관	
지 원	기타	장애	▶ 접수마감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전 자 격		기타	보훈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7			기타	기타
장애 ▶ (경증) 장애인증명서 / (중증) 중증장애인 확인서		▶ (경증) 장애인증명서 / (중증) 중증장애인 확인서		
증빙서	서류	보훈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0001π		울산경남 지역인재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우대사항) 우대자격증 보유자는 이래 자격증 종류에 따라 [필기] 전형 만점의 <mark>기점 차등부여</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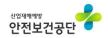
		구분	가산점 비율	자격증 종류	
		기술사	5%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금형,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용접, 표면처리,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가스, 기계안전,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폐기물처리	
우		기능장	3%	기계가공, 금형제작, 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위험물, 전기, 전자, 가스	
- 대 사 항	자격	기사	3%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금속재료, 용접,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전기, 전기공사,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전자, 가스, 산업안전, 소방, 폐기물처리, 환경위해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1%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조선,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금속재료,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화약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자, 가스, 산업안전, 소방, 폐기물처리, 승강기	
	증빙 서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구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채용
TE	직급	직무분야	채용권역	근무형태	근무지	인원
신입직	6급	신업인전	공고 참조	전일제 (주 40시간)	(최초 5년) 채용권역 내 (5년 경과) 전국 순환	공고 참조

공단사업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시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시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핵심직무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 분야 기술지원, 심사, 교육 등 사고·사망재해 예방사업
수행업무	 ▶ 전국 중상해, 사고사망 등 재해분석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심사 계획서 접수, 심사·확인 결과 행정처리, 수수료 관리 ▶ 재정지원 사업장 신청서 접수, 투자계획 컨설팅 행정처리, 심사·결정 결과 행정처리, 투자완료확인, 사후 모니터링 ▶ 안전인증 심사 관련 행정처리, 민원 상담 및 답변, 제증명서 발급 ▶ 산업안전 분야 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개발, 미디어 개발·보급, 교육과정 운영 제반 관리 등
필요지식 및 기술	 ▶ (주요) 고체·유체·열역학, 기계재료, 기계설계, 유공압, 비파괴 등 기계 관련분야 지식 ▶ (주요)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제어계측 등 전기 관련분야 지식 ▶ (주요) 유체·열역학, 화학공학, 석유화학, 고분자, 반응공학 등 화공 관련분야 지식 ▶ (주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분야 지식 ▶ (일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법령의 해석 및 적용능력 ▶ (일반)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 ▶ (일반) 제조 현장에 대한 점검 시 잠재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확인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력 ▶ (일반) 사업장의 공정 및 안전보건정보를 이해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 ▶ (일반)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필요역량 및 태도	 ▶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객관적 · 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 조직 내 ·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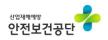


(지원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단, 기타분이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

	학위	▶ 학위	무관		
	자격	▶ 자격	자격 무관		
지	경력	▶ 경력	경력 무관		
원 자 격	기타	고졸 인재	▶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접수마감일 기준, 대학중퇴자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25.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제외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휴학 중인 자는 지원가능)		
증당	빙서류	고졸 인재	▶ (공통)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공통)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필요 시, 대학사실 증빙서류 포함 ▶ (해당자) 대학교 제적(중퇴)증명서		

(우대사항) 우대자격증 보유자는 이래 자격증 종류에 따라 [필기] 전형 만점의 가점 차등부여

		구분	가산점 비율	자격증 종류	
		기술사	5%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금형,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용접, 표면처리,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가스, 기계안전,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폐기물처리	
우대	우 대 사 항		기능장	3%	기계가공, 금형제작, 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위험물, 전기, 전자, 가스
사		기사	3%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금속재료, 용접,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전기, 전기공사,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전자, 가스, 산업안전, 소방, 폐기물처리, 환경위해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1%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조선,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금속재료,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화약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자, 가스, 산업안전, 소방, 폐기물처리, 승강기	
증탕	빙서류	국가기술자	격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그=	구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채용
12	=	직급	직무분야	채용권역	근무형태	근무지	인원
신입	직	5급	신업보건	공고 참조	전일제 (주 40시간)	(최초 5년) 채용권역 내 (5년 경과) 전국 순환	공고 참조

공단사업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시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시업 수행 등
핵심직무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산업보건 분야 기술지원, 심사, 교육 등 직업병 예방사업 수행
수행업무	 ▶ 화학물질, 석면, 소음 등으로 인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기술지원 및 비용지원 ▶ 감정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 과로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컨설팅 및 개선지원 ▶ 업무상질병 예방 시설 및 장비의 설치를 위한 사업장 재정지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획인, 보건관련 민간기관 평가, 중대재해조사, 사업장 보건진단 수행 ▶ 독성실험, 역학조사, 실태조사, 측정 및 분석, 산업보건통계 등 연구업무 수행 ▶ 산업보건분야 교육계획 수립 및 괴정개발, 미디어 개발・보급, 교육과정 운영 제반 관리 등
필요지식 및 기술	 ▶ (주요) 산업위생, 인간공학, 건강관리 및 증진 등 산업보건, 독성, 화학, 산업간호 관련분야 전공에 대한 지식 ▶ (주요)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분석•평가에 대한 지식 및 기술 ▶ (주요)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과로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지식 및 기술 ▶ (주요) 화학물질 기기분석 이론에 관한 지식 및 활용 능력 ▶ (주요) 석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이상기압에 대한 지식 ▶ (일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적용에 대한 지식 ▶ (일반) 사업장 유해작업환경관리 기술 및 노출수준 저감 대책 제시 능력 ▶ (일반) 산업환기시설 설계 및 성능검사에 관한 지식 및 기술 ▶ (일반) 조음•진동 방지시설 설계 및 측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 (일반)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필요역량 및 태도	 ▶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객관적 · 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 조직 내 ·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지원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단, 기타분이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

	학위	▶ 학위 무	학위 무관 자격 무관 경력 무관						
지	자격	▶ 자격 무							
원	경력	▶ 경력 무							
_ 자		장애전형	▶ 접수마감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격	기타	보훈전형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ΖН	니	장애전형	▶ (경증) 장애인증명서 / (중증) 중증장애인 확인서						
 	l서류	보훈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우대사항) 우대자격증 보유자는 이래 자격증 종류에 따라 [필기] 전형 만점의 <mark>가점 차등부여</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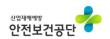
		구분	가산점 비율	자격증 종류				
우	우 대 사 항	기술사	5%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대기관리, 소음진동, 화공				
_		자격	자격	자격	자격	기능장	3%	해당없음
항		기사	3%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대기환경, 소음진동, 화공, 화학분석				
		산업기사	1%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증병	증빙서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구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채용
TE	직급	직무분야	채용권역	근무형태	근무지	인원
신입직	5급	건설인전	공고 참조	전일제 (주 40시간)	(최초 5년) 채용권역 내 (5년 경과) 전국 순환	공고 참조

공단사업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핵심직무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 분야 기술지원, 심사, 교육 등 사고·사망재해 예방사업				
수행업무	 ▶ 전국 중상해, 사고사망 등 재해분석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 ▶ 유해 · 위험기계에 대하여 설계 · 제조 · 설치 시 사전안전성 심사 및 현장확인 지원 ▶ 기술 ·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 ·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 위험성평가, KOSHA-MS, 체계구축컨설팅, 민간 · 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등 안전경영환경 정착 지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확인, 중대재해조사, 진단 등 재해예방 활동 수행 ▶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 · 사망만인율 산정 및 재해예방 실적평가 수행 ▶ 건설 연구과제, 사고조사,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산업안전통계 등 연구업무 수행 ▶ 건설안전 분야 교육계획 수립 및 괴정개발, 미디어 개발 · 보급, 교육과정 운영 제반 관리 등 				
필요지식 및 기술	 ▶ (주요) 건축, 토목 등 건설안전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 (주요) 건축・토목 공사시 가설구조물 등의 특성, 설계・운용 및 유해・위험성 관련 지식 ▶ (일반) 건설현장 점검 시 잠재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확인할 수 있는 자식 및 기술 ▶ (일반) 건설현장의 공정 및 안전보건정보를 이해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자식 및 기술 ▶ (일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 (일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법령의 해석 및 적용능력 ▶ (일반)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 ▶ (일반) 국제협력 교류, 국제안전보건동향파악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 ▶ (일반)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필요역량 및 태도	 ▶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객관적 · 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 조직 내 ·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지원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단, 기타분이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

	학위	▶ 학위 두	▶ 학위 무관					
	자격	▶ 자격 두	▶ 자격 무관					
	경력	▶ 경력 두	- 관					
의		장애	▶ 접수마감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원 자 격	기타	보훈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울산경남 지역인재	 ▶ 최종학력 기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소재(부산 제외)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원,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독학학위 취득자, 학점인정학위 취득자 등은 해당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함 					
		장애	▶ (경증) 장애인증명서 / (중증) 중증장애인 확인서					
증빙서류	l 서류	보훈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 ,	울산경남 지역인재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우대사항) 우대자격증 보유자는 이래 자격증 종류에 따라 [필기] 전형 만점의 기점 차등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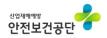
		구분	가산점 비율	자격증 종류		
우		기술사	5%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및지반, 철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및해안, 건설기계, 건설안전, 해양, 조경, 교통, 도시계획, 자원관리, 건축전기설비		
대사	대 사 항	기능장	3%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기계정비		
-		기사	3%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기계설비, 건축기계정비, 건설안전		
		산업기사	1%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기계설비, 콘크리트, 교통, 건축기계정비, 건설안전		
증빙서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구분		채용분야			채용	
十正	직급	직무분야	채용권역	근무형태	근무지	인원
신입직	6급	건설인전	공고 참조	전일제 (주 40시간)	(최초 5년) 채용권역 내 (5년 경과) 전국 순환	공고 참조

공단사업	신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인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핵심직무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 분야 기술지원, 심사, 교육 등 사고·사망재해 예방사업
수행업무	 ▶ 전국 중상해, 사고사망 등 재해분석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 사업장 발굴, 계획서 접수, 심사·확인 결과 행정처리, 수수료 관리 ▶ 재정지원 사업장 신청서 접수, 투자계획 컨설팅 행정처리, 심사·결정 결과 행정처리, 투자완료확인, 사후 모니터링 ▶ 건설안전 분야 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개발, 미디어 개발·보급, 교육과정 운영 제반 관리 등
필요지식 및 기술	 ▶ (주요) 건축, 토목 등 건설안전 관련분야 지식 ▶ (주요) 건축・토목구조물 등의 특성, 설계・운용 및 유해・위험성 관련 지식 ▶ (일반) 건설현장의 공정 및 안전보건정보를 이해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 ▶ (일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법령의 해석 및 적용능력 ▶ (일반)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 ▶ (일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시 잠재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산대책을 제시・확인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력 ▶ (일반)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필요역량 및 태도	 ▶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객관적 · 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 조직 내 ·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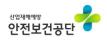


(지원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단, 기타분이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

	학위	▶ 학위 무관			
	자격	▶ 자격 무관			
지	경력	▶ 경력 무관			
원 자 격	기타	■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 접수마감일 기준, 대학중퇴자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25.2월 고등학교 졸업이 ※ 접수마감일 기준,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정자 포함 자) 제외		
증빙	J서류	고졸 인재 ▷ (공통)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공통)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필요 ▷ (해당자) 대학교 제적(중퇴)증명서	시, 대학사실 증빙서류 포함		

(우대사항) 우대자격증 보유자는 아래 자격증 종류에 따라 [필기] 전형 만점의 <mark>가점 차등부여</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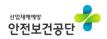
		_							
	우 대 사 항	구분	가산점 비율	자격증 종류					
우		기술사	5%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및지반, 철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및해안, 건설기계, 건설안전, 해양, 조경, 교통, 도시계획, 자원관리, 건축전기설비					
-		기능장	3%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기계정비					
항							기사	3%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기계설비, 건축기계정비, 건설안전
		산업기사	1%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기계설비, 콘크리트, 교통, 건축기계정비, 건설안전					
증병	통 빙서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구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채용
TE	직급	직무분야	채용권역	근무형태	근무지	인원
신입직	5급	경영	공고 참조	전일제 (주 40시간)	(최초 5년) 채용권역 내 (5년 경과) 전국 순환	공고 참조

공단시업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핵심직무	▶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지원
수행업무	 ▶ 산업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지원 ▶ 경영기획, 회계자산관리, 인사노무, 총무, 통계, 교육, 홍보, 국제협력, IT 등
필요지식 및 기술	 ▶ (주요) 기획, 인사, 노무, 보수, 예산, 회계, 교육, 홍보, 국제협력, IT 등 직무 관련 전공지식 ▶ (일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법령의 해석 및 적용능력 ▶ (일반)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 ▶ (일반) 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를 이해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 ▶ (일반) 국제협력 교류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 ▶ (일반)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필요역량 및 태도	 ▶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객관적 · 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 조직 내 ·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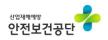


(지원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단, 기타분이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

	학위	▶ 학위 두	▶ 학위 무관 ▶ 자격 무관						
지	자격	▶ 자격 두							
원	경력	▶ 경력 두	경력 무관						
자		장애	▶ 접수마감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격	기타	보훈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장애	▶ (경증) 장애인증명서 / (중증) 중증장애인 확인서						
60	5^I TT	보훈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우대사항) 우대자격증 보유자는 이래 자격증 종류에 따라 [필기] 전형 만점의 기점 차등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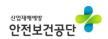
	우 대 사 항	구분	가산점 비율	자격증 종류	
-		기술사	5%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3%	해당없음	
-		기사	3%	정보처리	
		산업기사	1%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증팅	서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구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채용
一十正	직급	직무분야	채용권역	근무형태	근무지	인원
신입직	6급	경영	공고 참조	전일제 (주 40시간)	(최초 5년) 채용권역 내 (5년 경과) 전국 순환	공고 참조

공단사업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핵심직무	▶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지원
수행업무	▶ 산업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지원 ▶ 총무, 회계자산관리, 교육, 홍보 등
필요지식 및 기술	 ▶ (주요) 총무, 회계자산관리, 교육, 홍보, IT 등 관련 기초지식 ▶ (일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법령의 해석 및 적용능력 ▶ (일반)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도 ▶ (일반) 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를 이해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 ▶ (일반)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필요역량 및 태도	 ▶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객관적 · 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 조직 내 ·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지원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단, 기타분이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

	학위	▶ 학위 두	· 학위 무관 · 자격 무관				
	자격	▶ 자격 두					
지 원	경력	▶ 경력 두	• 경력 무관				
자격	기타	고졸 인재 전형	▶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접수마감일 기준, 대학중퇴자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25.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제외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휴학 중인 자는 지원가능)				
증빙	J서류	고졸 인재 전형	▶ (공통)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공통)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필요 시, 대학사실 증빙서류 포함 ▶ (해당자) 대학교 제적(중퇴)증명서				

(우대사항) 우대자격증 보유자는 이래 자격증 종류에 따라 [필기] 전형 만점의 기점 차등부여

		〈국가기술제	· 구경〉		
		구분	가산점 비율	자격증 종류	
		기술사	5%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3%	해당없음	
우		기사	3%	정보처리	
· 대	-	산업기사	1%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국가기술제	자격 외〉		
		가산점	비율	자격증 종류	
		59	%	해당없음	
		39	%	전산회계운용사 2급 이상, 전산세무(2급 이상)	
		19	%	전산회계운용사 3급, 전산회계(2급 이상)	
증병	증빙서류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 이외) 자격증 및 자격증명서				





【참고자료 1】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공단「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고자료 2】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우리 공단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부산 제외))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지원서 접수단계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이전 지역인재 학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우리 공단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부산 제외))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 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②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서울·경남·충북) 나라학교 설치법 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②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이전 지역인재

- 이전 지역(우리 공단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부산 제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②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시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②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J)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다)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②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②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④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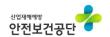
- ①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군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 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 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분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 ②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 ③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⑤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⑥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 시관학교 중퇴자: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시관학교 중퇴자: 비해당
- ⑦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참고자료 3】 직무수행계획서 문항

직무수행계획서(경력직 2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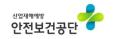
-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u>직무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예</u>: 성별, 연령,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을 작성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비속어 사용, 무의미한 단어나열, 타 기업 지원 등) 및 허위기재자는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1. 본인이 응시한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직무능력은 무엇인지, 본인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공단 사업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1,400자 이내)
- * 평가착안사항: 직무수행능력
- 2. 우리 공단의 인재상(공공, 전문성, 화합, 고객, 창의) 중 본인과 가장 부합하는 인재상을 한 가지 선택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400자 이내)
- * 평가착안사항: 조직이해능력
- 3. 본인이 응시한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자기개발 또는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내용과 그 성과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400자 이내)
- * 평가착안사항: 자기개발능력(성과, 노력)





직무수행계획서(신입직_채용형인턴 5급, 6급)

-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u>직무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예</u>: 성별, 연령,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을 작성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입사지원서 <u>불성실 기재자(</u>무의미한 단어나열, 타 기업 지원 등) <u>및 허위기재자는 감점 또는</u> 부적격 처리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요소 7가지 중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 1가지를 선정하여 그 이유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600자 이내)
- 2. 공단의 사업 중 산업재해예방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업 1가지를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해당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600자 이내)
- 3. 개인 또는 조직과의 갈등상황에서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하여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600자 이내)
- 4. 공단 업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는 무엇이며 그 이유를 본인의 가치관 중심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600자 이내)
- 5. 본인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활용하여 성취를 이룬 경험에 대하여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600자 이내)





【참고자료 4】교육이수현황 작성 관련 세부사항

교육이수현황 작성 관련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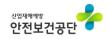
- 직무기술서 상 채용분야별 필요지식 및 기술 중 **"주요"** 필요지식 및 기술 과 관련된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이수현황을 작성
- ※ 접수마감일 기준, 이수가 완료된 교육에 한하여 작성
- 학교교육 : "주요" 필요지식 및 기술 관련 정규 학교교육 이수사항(학기별)
- 직업교육: "주요" 필요지식 및 기술 관련 고용노동부 HRD-Net 등록 과정으로 한정

<5급>

채용분야	주요 필요지식 및 기술
	▶ 고체·유체·열역학, 기계재료, 기계설계, 유공압, 비파괴 등 기계 관련분야 의 공학적 지식
	▶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제어계측 등 전기 관련분야 의 공학적 지식
산업안전	▶ 고체·유체·열역학, 화학공학, 석유화학, 고분자, 반응공학 등 화공 관련분야 의 공학적 지식
	▶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분야 의 공학적 지식
	▶ 기계설비, 화학플랜트, 전기·전자기기 등의 특성, 설계·운용 및 유해·위험성 관련 지식
	▶ 산업위생 , 인간공학 , 건강관리 및 증진 등 산업보건, 독성, 화학, 산업간호 관련분야 전공에 대한 지식
	▶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 분석 · 평가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산업보건	▶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과로 등 근로자 건강보호 를 위한 지식 및 기술
	▶ 화학물질 기기분석 이론 에 관한 지식 및 활용 능력
	▶ 석면 ·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이상기압에 대한 지식
건설안전	▶ 건축, 토목 등 건설안전 관련분야의 공학적 지식
[신설인인	▶ 건축·토목 공사시 가설구조물 등의 특성, 설계·운용 및 유해·위험성 관련 지식
경영	▶ 기획, 인사, 노무, 보수, 예산, 회계 등 경영관련 전공지식

<6급>

채용분야	주요 필요지식 및 기술
산업안전	 ▶ 고체 · 유체 · 열역학, 기계재료, 기계설계, 유공압, 비파괴 등 기계 관련분야 지식 ▶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제어계측 등 전기 관련분야 지식 ▶ 고체 · 유체 · 열역학, 화학공학, 석유화학, 고분자, 반응공학 등 화공 관련분야 지식 ▶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분야 지식
산업보건	▶ 산업위생, 인간공학, 건강관리 및 증진 등 산업보건, 독성, 화학, 산업간호 관련 지식
건설안전	▶ 건축, 토목 등 건설안전 관련분야 지식 ▶ 건축·토목구조물 등의 특성, 설계·운용 및 유해·위험성 관련 지식
경영	▶ 총무, 회계자산관리, 교육, 홍보 등 관련 기초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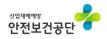
【참고자료 5】공인어학성적 인정 종류 및 기준

공인어학성적 인정 종류 및 기준

○ 신입직 5급(채용형 인턴, 장애 제외)을 대상으로 필기전형에 10% 반영하며, 기준 점수 충족시 10점, 기준 미충족 또는 미제출 시 0점

인정종류	TOEIC	TOEFL IBT	TEPS	TOEIC SPEAKING	OPIC
인정기준	700점 이상	80점 이상	264점 이상	120점 이상	IM2 이상

- ※ 모든 어학성적은 임용예정일(24. 10. 7.자)로부터 2년 이내 응시(22. 10. 8. 이휘하여 입시지원 미감 시까지 성적발표가 완료된 국내 시험 성적에 한하며, 가장 유리한 1개 시험에 대해서만 제출(단, 지원자가 보유한 어학성적 중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시전등록된 성적의 경우 최대 5년 이내 어학성적 인정(19. 1. 1.이후 응시)
- ※ 자격번호 미부여, 발표예정 등으로 지원서 작성 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접수마감 시점 기준 유효하지 않은 성적(진위확인 불가)은 미인정
- ※ 청각장애인(2~3급) 토익성적의 경우, 읽기(R/C) 평가 점수만 성적표에 명시되므로 입사지원서에 읽기(R/C) 평가 점수의 두배 점수 기입(토익시험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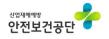




【참고자료 6】인사혁신처 어학성적 등록 방법

인사혁신처 어학성적 등록 방법







【참고자료 7】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 발급안내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 발급안내

- □ 6급 채용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자로써, 고졸학력임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를 제출
 -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학자금 대출·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서류상 내역이 "신청내역 없음"으로 발급됨(고등학교 재학중 포함)
 - 학자금 등 신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에서 중퇴, 재학, 휴학을 증명하는 "대학사실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발급방법

① 한국장학재단(<u>https://www.kosaf.go.kr)에</u> 접속하여 메인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장학금-신청증명서발급'클릭



②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아이핀 로그인







【참고자료 8】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기준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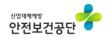
○ 채용비위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기회 부여

- ①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 단, 다음 채용단계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에서 1회에 한하여 적용
 - * 예: 피해발생 인지 시점에 해당 채용단계가 종료된 경우
- ②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불가능하나, 피해자 그룹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 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 피해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참고자료 9】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

①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24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규직원 채용공고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로서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자

② 편의지원 신청 방법

○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덧붙임3)을 작성하시어 <u>recruit@kosha.or.kr</u> 이메일 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이메일 작성 시 편의제공 항목에 신청사항 기재

- ①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문 확인
- ②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신청 ※ [덧붙임3] 신청서 작성
- ③(필요시) 구체적인 내용 기재
- ④진단서 등 증빙서류 확인
 - ※ [덧붙임1]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

▼

이메일 작성 시 증빙서류(사본)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사본)를 등록

▾

신청 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

결과통보(문자 등)





③ 신청 시기

○ (경력직)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인성검사 기간 종료 시까지 (신입직)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전형 전 1주일 전** 까지 장애편의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

4 신청 시 유의사항

- [덧붙임1]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 [덧붙임1]의 편의 제공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이메일 내용에 ①본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②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 됩니다([덧붙임2] 의사진단서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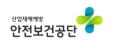


덧붙임1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 서류			
지체 장애	공통	·확대문제지, 확내답인지,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고사장 배경(좌석간력 조정)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상지 한장> ·시험시간 연장(1.5배) ·답안지 대필		- 의사진단서 (원본)			
뇌병변 장애	공통	·확내문제지, 확내답안지, 보조 공학가기 지참 허용 ·별도고사장 배정(좌석간력 조정)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0 1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1.5배) ·답안지 대필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 의사진단서 (원본)			
시각 장애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인지,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특성 면접위원 시전 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확대문제지 제공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1.5배) ·답안지 대필		의사진단서 (원본)			
청각 장애	उ₹	·수화통역사 배차응시요령 등 서면지료 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시전 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수화통약사 배자 응시요령 등 사면지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 의사진단서 (원본)			
언어 장애	공통(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특성 면접위원 시전 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5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 의사진단서 (원본)			
지적, 자폐성, 정신	공통(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별도고사장 배정좌석전 조정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1.5배) ·답안지 대필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 의사진단서 (원본)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검토 후 안내			

※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mark>덧붙임2</mark> 의사진단서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 □ 발급일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유효 진단서 발급일
2024년 7월 12일	2022년 7월 13일 이후

-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아래 3가지)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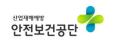
⇨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		예시 ※ ①~③ 반드시 기재
뇌병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의사소통에 일부 시간이 필요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면접시간 연장
청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증상: 양쪽 귀 청력 약화에 따른 청각 결손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의사소통(면접)의 어려움에 따라 수화통역사 요청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수화통역사 배치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





덧붙임3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년도 신규직원 채용전형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합니다.

1. 장애 유형 및 정도

구분	경증	중증	비고
지체장애			상지 □ 하지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지적,자폐성,정신			지적 □ 자폐성 □ 정신 □
기타			

2. 편의지원 제공 신청항목(중복가능)

	필기전형								면접	전형		
구분	확대 문제 지	발 장 장	수화 통역 사	보조 공학 기기	시험 시간 연장	답안 지 대필	장애 시전 고지	전담 도우 미	확대 문제 지	수화 통역 사	보조 공학 기기	면접 시간 연장
지 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												

3.	편의지원	제공	사유	:	
----	------	----	----	---	--

신청인

성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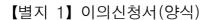
(서명)

생월일 : 연락처 :

※ 첨부 : 장애인증명서(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1부, (해당자) 의사진단서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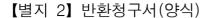
<u>이의신청서</u>

공고번호		이의전형	□ 서류전형, [전형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이 메일				
이의신청 내 용						
상기 내용	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를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한국산업인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유 의	사 항				
· 이의신 누락 시 · 이의신	차에 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청서 작성정보(채용분야 및 응시번호, 성명, 접수되지 않습니다. 청 내용은 사실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 과 무관한 문의,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	탁하게 기재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정보요구 등은 처리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은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청구서

공고번호		접수일자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연 락 처						
반환주소	(우편번호 □□□□□)							
반환요구 서류	1. 2. 3.							
반환방법	□ 등기우편(우편요금 착불)), 🗆 등기우 [:]	편(우편요금을 선 계	좌이체)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 나을 청구합니다.	법 시행령 제	네2조 및 제4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채용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한국산업인	· 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공 지 사 항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용포기 확인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년도 신규 직원 채용 합격자로서 개인사정으로 임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임용동의 확인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년도 신규 직원 채용 예비합격자로서 추가합격 임용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임용예정일(년 월 일)에 맞춰 정상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당 근무지에 도착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되고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입사기회가 부여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